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6월 30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김혜련, 이영실, 서윤기,
이정인, 김화숙, 봉양순, 김용연,
신원철, 김소양, 김동식, 오현정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,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또는 친인척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‘보호자’의 정의를 명시하고,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,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법률 제17087호,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, 2020년 10월 1일 시행)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,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'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'에서 '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'로 변경함.
- 나. 사례관리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규정함.(안 제2조제4호)
- 다. '보호자'에 관하여 정의함.(안 제2조제5호 신설)
- 라. 보호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의2 신설)
- 마. 아동학대예방계획 내용에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)
- 바.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학대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규정함.(안 제10조제3항제1호)
- 사.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1조의2 신설)
- 아.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1조의3 신설)
- 자.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.(안 제12조제2항 신설)
- 차.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3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방지”를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”를 “사례관리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방지”를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방지”를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지”를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보호자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방지”를 각각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”를 “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”를 “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예방 및 방지”를 “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3의2.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 중 “예방 및 방지”를 “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방지”를 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동학대예방”을 “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항) 중 “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”를 “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대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·재입학·전학·편입학을 포함한다)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시장은 시립병원,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법 제23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구청장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 중 “예방 및 방지”를 “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지도·감독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14조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·방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·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<u>방지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란 법 제45조에 따른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<u>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사례관리</u> 및 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5. “보호자”란 <u>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 · 양육 ·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·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· 감독하는 자</u>를 말한다.</p>

제3조(적용범위)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함)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

다.

제3조(적용범위) -----
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-

-----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
----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

-----.

② -----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

-----.

제4조의2(보호자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
--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-
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

2. (생략)

3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<신설>

4. (생략)

5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제6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법원, 수사기관,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--

3의2.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4. (현행과 같음)

5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-----

6. -----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) -----
--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

-----.

제7조(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)

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(생략)

제8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) ① 시장

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·

운영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제7조(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)

① ----- 방
지 및 피해아동 보호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
지 및 피해아동 보호 -----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) -----

-----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
및 피해아동 보호-----
-.

제10조(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·

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학대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
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

2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2조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·재입학·전학·편입학을 포함한다)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시장은 시립병원,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

홍보)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3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

홍보) ① -- 법 제23조에 따라 --

--.

② 시장은 구청장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업비의 지원) -----
-----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-----

-----.

제13조의2(지도·감독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-----
- 예방·방지 -----

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----.